

의안번호	제748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4년 10월 24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

#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748
----------	-----

제출연월일 : 2024년 10월 2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과 업종 고도화 촉진, 기술창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설치한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혁신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
- 시설 사용의 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시설의 주차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의 위탁과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 11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과 업종 고도화 촉진, R&D(연구개발),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267에 둔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지원
2. 창업활동 지원
3. 기업 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
4.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
5. 시설 및 부대장비 임대 사업
6.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허가)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료) 제4조에 따른 사용료는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관리

비용은 따로 부과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경) 도지사는 안정적인 고정수요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사용의 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
2.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주차관리) 도지사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등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관리·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센터 운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비는 시설 임대료, 관리비 수입, 시설 대관료 등으로 충당하며,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2-2
- 면적 : 연면적 3,640㎡ / 부지면적 3,830㎡(지하1층, 지상4층)
- 주요시설 : 공유오피스, 회의실, 로비, 휴게음식점, 부대시설 등

## 2. 비용 발생 요인

-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비
  - 위탁사무 : 혁신지원센터 관리·운영, 각종 세미나 및 회의 유치·개최·홍보 등

## 3. 관련조문

- 안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나. 추계 결과 : 총 12억 원 요인 발생(5년 간)

※ 오창과학산단 혁신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방안 참고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임대료 등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출	224,928	235,260	244,174	249,724	255,401	1,209,487
민간위탁금	224,928	235,260	244,174	249,724	255,401	1,209,487
재원조달	224,928	235,260	244,174	249,724	255,401	1,209,487
임대료 등	151,888	231,556	284,669	291,557	291,558	1,251,228
도비	73,040	3,704	-40,495	-41,833	-36,157	-41,741

## 6. 작성자 : 투자유치국 산단관리과장 김두환